

1. 개정이유

방향지시등 미점등,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래 규정하지 않았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망일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개정하며, 중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초질서와 관련된 ①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②좌석안전띠 미착용, ③안전모 미착용에 대하여 벌점 10점부과를 신설하고, 교통 사망사고의 사망기준일을 국제기준OECD에 맞춰 사고발생 시부터 30일 이내로 통일시키며, 중상해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 기준을 추가하여 사고결과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을 부과하고, 별표 28의 일련번호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임(안 별표 28, 별표 2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예비심사 준비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중 제3호 가목 및 나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9 일련번호 14 내용란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및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일련번호 6부터 28까지, 30부터 35까지, 38부터 43까지”로 한다.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10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3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4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5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6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7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8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9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10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11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12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13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7조제3항	
1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16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1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20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21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22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23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24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제22조	
25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 제4항	
26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27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28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29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3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 · 제2항	10
3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 · 제5항, 제60조제1항	
3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3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 · 제3항 · 제4항	
3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 · 제3항, 제60조제2항	
3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36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 · 양보 위반	제29조제4항 · 제5항	
37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의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제29조제6항 본문	
3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39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40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4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56조의2제1항	
42	돌 · 유리병 · 쇠파이프 등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43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44	자동차등의 운전자의 신호불이행(방향전환 등, 진로변경 또는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제38조제1항	
45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제1항	
46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운전자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50조제3항	
47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운전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50조제4항	

(비고)

1.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일련번호 6, 9부터 12까지, 14, 15, 19, 21, 24, 25, 30부터 37까지, 38, 39, 42, 43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가. 일련번호 1,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 나. 일련번호 5, 13, 21, 22, 35(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일련번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4. 일련번호 35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해 1명마다	40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해(이하 ‘중상해’라 한다.)를 입

			어 운전자에 대한 송치 결정이 있을 때 (40점)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중상해는 제외한다)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8 중 제3호 가목 및 나목(1)의 개정규정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발생한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